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8. 5. 22.

행정위원회

###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5월 1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5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8. 5. 21)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고광득)

####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 명확화,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 관련 근거조항의 변경, 시장정비사업의 감면요건 명확화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2007. 7. 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4조의2)
- 2007. 4. 5부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문화재보호법」 정비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변경  
(안 제7조 제1항, 같은조 제2항)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문을 정비하여 시장정비사업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제1항)
- 서울시가 경쟁도시(싱가폴, 홍콩)에 비하여 조세부담률이 높은 관제로 경쟁력이 약하므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감면기간을 확대(안 제18조)
-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을 인하하여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안 제23조의2)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 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한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을 실시한 후 마련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審査結課：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1 호
----------	---------

제출년월일 : 2008.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 명확화, 구관사업용 부동산 감면 관련 근거조항의 변경, 시장정비사업의 감면요건 명확화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의2)

-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 방지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명확화(안 제5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06.10.4.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되어 '07.4.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수정

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변경(안 제7조제1항, 제2항)

- 「문화재보호법」이 '07.4.11.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라. 구관사업용 부동산 감면관련 근거조항 변경(안 제7조의2)

-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인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감면조례로 이관

마.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안 제11조)

-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변경

바. 시장정비사업의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문 정비

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기간 확대(안 제18조)

- 서울의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 우리시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 감면기간 확대

아.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23조의2)

- 서울시의 관광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높은 숙박비에 있다고 분석 세계 인하를 통한 객실요금 인하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감면 조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88.4.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세제과-3219('08.3.10), 세제과-13308('07.10.10) 구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 공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08.3.17.~'08.4.7.)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총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제1항중 “「문화재 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1조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기준일로부터 7년간”을 “기준일로부터 10년간”으로, “그 다음 3년간”을 “그 다음 5년간”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

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p> <p>6.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p> <p>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p> <p>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1. 「문화재 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 3. (생략)</p> <p>②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lt;신설&gt;</p>	<p>제4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p> <p>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p> <p>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각 호에서 정하는-----</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p> <p>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p> <p>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p> <p>-----</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 -----</p> <p>-----</p> <p>제7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p>



현행

개정안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8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

제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	개정안
<p>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 생략)</p> <p>1. ~ 2.(생략)</p> <p>&lt;신설&gt;</p>	<p>----- -----<u>기준일로부터 10년간</u> -----<u>그 다음 5년간</u> -----</p> <p>1. ~ 2. (현행과 같음)</p> <p><u>제23조의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u></p> <p><u>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u></p> <p><u>가. 특급호텔 : 20%</u></p> <p><u>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u></p>